

# ARTS COUNCIL KOREA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 다원예술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다원예술 창작산실	2023.10.4.(수)~10.26.(목) 18:00 마감	061-900-2167	83
다원예술 창작주체			88

## 다원예술 창작산실

새로운 유형의 창작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했던 기존의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사업을 202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우수 창작작품 브랜드인 ‘창작산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향유 측면에서도 더욱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규모와 예산을 전년도 대비 상향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분야도 기존의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기술 결합 예술활동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장르 중심 지원사업에서는 결코 시도해볼 수 없었던 동시대 가치를 담은 실험적인 창작활동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사업명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다원예술 창작산실	
유형 구분	창작발표	① 쇼케이스 ② 창작발표	
세부 분야	-	분야A :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 기술 결합 예술활동	
지원 예산	총 515백만원	총 1,568백만원	
지원액 규모	2~5천만원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지원규모
		유형①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유형② 창작발표	3천만원~5천만원		

### 1. 사업목적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예술분야 우수 창작물 발굴
- 기존 전통 장르에서 실현하기 힘든 새로운 접근에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작품 창작, 기술 결합 활동, 새로운 관객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예기금 창작 지원사업의 외연 확장

##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b>I. 지원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분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작발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장르, 다매체, 기술 결합, 동시대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다원적 성격을 가진 기초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지원</li> </ul> </li> </ul>	
<b>〈유형 구분〉</b>	
유형① 쇼케이스	유형② 창작발표
<b>〈세부 분야 구분〉</b>	
분야A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기술 결합 예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활동 비용 지원 및 비재정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제공</li> </ul>	
<b>II. 필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신청) 작품 제작 및 발표에 대한 기획의도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li> <li>(선정이후) 창작발표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li> <li>(활동결과)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li> </ul>	

○ 신청대상 : 예술가 및 단체

○ 자격기준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예술창작 프로젝트 발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2024년 총 지원예산 : 1,568백만원

○ 지원규모

유형	연간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10% 이상	18건
창작발표	3천~5천만원	10% 이상	32건

\* 유형별/세부분야별 지원 선정 건수는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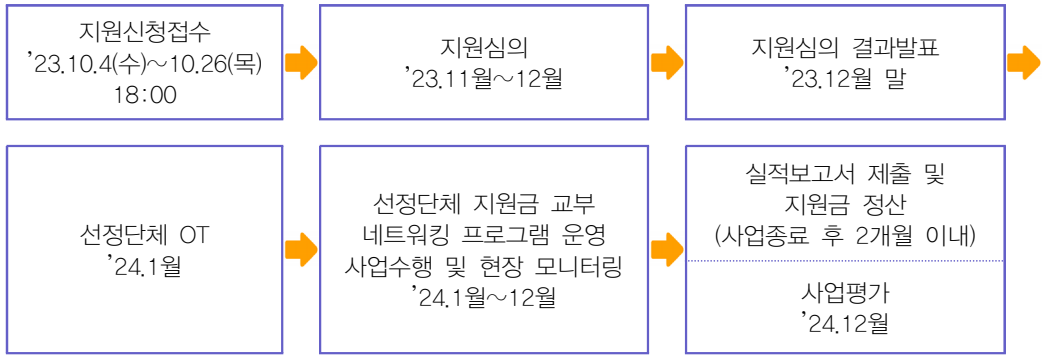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필수

- 연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진행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서류심의 및 (2차)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예술성 (40%)	<p>[작품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기획 의도가 분명하며, 이를 표현하는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li> </ul> <p>[작품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li> <li>• (분야A) 기존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li> <li>• (분야B) 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li> </ul>
계획의 충실성 (40%)	<p>[실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확산 등의 창작발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li> </ul> <p>[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단계부터 발표(관객개발 포함)까지 일정 및 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한가?</li> </ul> <p>[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li> </ul> <p>[참여 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인력은 사업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투입인력/기간) 되었는가?</li> <li>• 참여 인력은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는가?</li> </ul>
기대효과 (20%)	<p>[발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작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li> </ul> <p>[현장 파급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업 실현을 통해 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li> </ul>

####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 사례비(원천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기술진 등</li> <li>※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 (사업에 명확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li> </ul> </li> <li>• 재료비, 제작비,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li> <li>-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li> </ul> </li> <li>•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 등록료 (지원신청서 명시 필수)</li> <li>•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등</li> </ul> </li> <li>• 홍보비</li> <li>• 영유아 돌봄비</li> <li>•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권장</li> <li>-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시설·장비·SW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li> </ul>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li> </ul>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li> </ul>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진행비, 간담회비(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li> </ul>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 5.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공통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분야B 필수> 기술분야 전문개(업체)참여 의향서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 <분야B 필수> 작품 구현도(기술도면)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 <해당 시> 저작권 동의서 (기존 작품을 활용, 가공, 참조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 061-900-216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유형 택1 신청)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합니다.
- (동일사업 중복수혜 불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중복수혜 사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예외) 공간 협력 가능

- 사유 : 창작 및 발표에 특화된 공간 부족 및 한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한 선정 예술인(단체)의 필요 반영
- 협력대상 : 공공 및 민간 전시장·공연장 등 운영주체
- 협력범위 : 발표 및 연습을 위한 공간 무료 대관  
(창작지원금 지급 등 예술위와 동일 방식의 지원형태 불가)
- 협력표기 : 창작결과물(포스터, 팸플릿 등)에 협력기관 표기 가능(주관, 주최 형태 불가)

- (공통안내사항 필수 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원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단체, 공간, 매개,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 핵심적인 역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1. 사업목적

-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예술인과 협업하는 공간지원을 통해 실험적 작품 창작, 기술 결합 활동, 새로운 관객 개발 활성화

###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I. 지원개요

-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유형 구분〉	
유형① 예술가/단체 (3개년 지원)	유형② 공간 (1개년 지원)
〈세부 분야 구분〉	
분야A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기술 결합 예술활동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창작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li> </ul>	
<p><b>II. 필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신청) 창작주체는 지원 기간(3개년/1개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li> <li>(선정이후) 창작발표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li> <li>(활동결과)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 연간 활동실적을 담은 영상 제출</li> </ul>	

○ 신청대상 : 실험적 예술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가/단체, 공간운영 주체

○ 자격기준

[유형별 자격기준]

유형	지원자격
예술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이상 실험적 예술(탈장르적, 기술결합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 → (필수) 관련 활동 증빙서류 제출</li> <li>문화예술 지원기관(공공)의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 → (필수) 사업수행 이력 확인을 위해 1개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li> </ul>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이상 실험적 예술(탈장르적, 기술결합 등) 분야의 창·제작, 향유 실적을 가진 공간 운영 단체</li> <li>- (분야A) 전시 및 퍼포먼스, 다원적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등 운영</li> <li>- (분야B) 기술 결합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창·제작 스튜디오, 시연·발표 공간 등 운영 → (필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li> </ul>

○ 지원내용

유형	지원자격
예술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2026년 3개년간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li> <li>작품 창작·연구·비평 등 다양한 예술 활동</li> </ul>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개년간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li> <li>(필수) 공간 자체 기획 프로젝트를 2회 이상 개최 * 외부 예술가(단체) 참여 및 창작 인프라(장비, 기술 인력) 제공 필수</li> </ul>

○ 2024년 총 지원예산 : 900백만원

○ 지원규모

유형	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예술가/단체	5천만원(정액) × 3개년	10% 이상*	2건
공간	1억원(정액) × 1개년	10% 이상*	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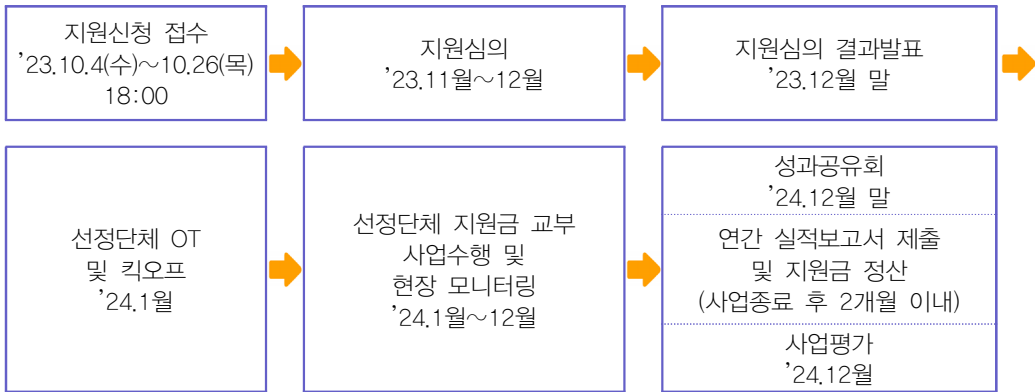
\* 유형별/세부분야별 지원 선정 건수는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향후 창작주체 사업 재선정 시 자부담 비율 상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필수
- 연간 킥오프(착수회의)·성과공유회 추진
  - \* 홈페이지를 통한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심의를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서류심의 및 (2차)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의 예술활동/공간운영 이력(경력)</li> <li>• 지원자의 대표적 지원사업 수행 결과 내용</li> <li>• 지원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li> <li>• (공간)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li> <li>• (공간)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프라(장비/인력)를 예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li> </ul>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예술현장 친화적 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며,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이 높은가?</li> </ul>
활동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3년간(예술가/단체)/1년간(공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li> <li>• 지원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li> <li>• 지원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li> <li>• 지원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li> <li>•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li> </ul>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의 활동 이력과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li> <li>• 지원자의 목표와 활동 내용을 통해 지원자/공간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li> </ul>

####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li> </ul>
	상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li> </ul>
	일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li> <li>•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창작 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li> <li>• 사업자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준수</li> </ul>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 사례비(원천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기술진 등</li> <li>※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 (사업에 명확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li> </ul> </li> <li>• 재료비, 제작비,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li> <li>※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li> </ul> </li> <li>•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 등록료 (지원신청서 명시 필수)</li> <li>•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등</li> </ul> </li> <li>• 홍보비</li> <li>• 영유아 돌봄비</li> </ul>

비목	세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권장</li> <li>-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li> </ul>
	일반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전문업체 대가 지급(해당 시)</li> <li>- 신청주체가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대가 지급 비용</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시설·장비·SW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li> </ul>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li> </ul>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li> </ul>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li> </ul>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 5.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예술가/단체 유형)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 실적보고서
  - <필수>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 061-900-216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유형 택1 신청)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합니다.
- (공통안내사항 필수 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